|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정평가의뢰서** | | | | | | | | | | | | | | |
| 감정평가의뢰물건 | | | □토지 □주택 □상가 □공장 □아파트 □기타( ) | | | | | | | | | | | |
| 의뢰물건의 소재지 | | |  | | | | | | | | | | | |
| 소 유 자 | | 주소 |  | | | | | | | | | | | |
| 성명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감정평가서의 사용목적 | | | □담보(금융기관, 보험회사, 일반) □경매 □처분 □보상 □관리  □자산평가 □일반거래 □임대차 □기타 ( ) | | | | | | | | | | | |
| 감정평가서의 제출처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채무자명(담보인 경우)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의뢰물건의 추정가액 | | | \ |  | | | (감정평가서 소요부수 : | | | | |  | 부) | |
|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 료 | | |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부  ③ 토지(임야)대장 : 부 ④ 건축물관리대장 : 부  ⑤ 지적도(또는 임야도) : 부 ⑥ 기타 ( ) | | | | | | | | | | | |
| 기타 참고사항 | | |  | | | | | | | | | | | |
| 계산서를 공급받는자의  세무보고용 기재사항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② 상호(법인명) | |  | | | | ③ 성명 | |  | | | |
| ④ 전자세금계산서 | |  | | | | | | | | | |
| **후면 기재의 약정사항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 의뢰인 주 소  기관 또는 상호  성 명 (인) (Tel. ) | | | | | | | | | | | | | | |
| EMB00003f34073d |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본관 7충  (여의도동, 기계진흥회관)  TEL : (02)782-7877, FAX : (02)782-7879 | | | | | | | | |
| **소유자와 의뢰인이 다른 경우**  본인의 소유인 위 물건에 대하여  의뢰인 가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에  감정평가 의뢰함을 동의함.  년 월 일  소유자(권리자) 성명 (인) | | | | | | **금융기관 등의 담보감정인 경우**  위의 감정평가 의뢰목적이 담보대출임을 확인함.  년 월 일  금융기관  부 점 (인) | | | | | | | | |
| 접수번호 |  | | | | | 착수금 | |  | | | | | | |
| **착수금 및 감정평가수수료 입금계좌** | | | | | | **하나은행 256-910061-51004**  **(예금주 : 더밸류감정평가법인(주))** | | | | | | | | |

|  |
| --- |
| **약정사항**   1. 감정평가의 물건(권리)중 법률에 의해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것과 천재지변․사변이나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감정평가가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감정평가 의뢰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감정평가 보수를 납입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감정평가 의뢰물건의 추정가액을 기준한 감정평가 수수료의 2분의 1을 감정평가 착수금으로 감정평가 접수 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소요추정 출장여비를 착수금에 포함합니다. 4. 감정평가의 보수는 당사의 감정평가완료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5.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보수의 완납 후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감정평가 의뢰 시 납입한 감정평가 착수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감정평가불능 사유가 감정평가 의뢰인(담보 감정평가인 경우 확인 금융기관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하는 경우의 감정평가 착수금 환급은 제7항에 준합니다. 7. 감정평가 의뢰 후 당사의 현장조사 전에 의뢰인이 감정평가 의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제2항의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의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 착수금의 50%를 당사에 귀속하며 현장조사 후에는 감정평가 착수금을 일체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서 작성 후에는 소정의 감정보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8.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와의 특약에 따라 착수금 없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제6항 단서, 제7항 및 제10항의 사유로 감정평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반려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의뢰 시 납입하지 아니한 착수금은 동 항에 준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9. 당사의 승낙 없이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감정평가 목적에 기재된 제출회사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 전재할 수 없으며 당사는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0. 감정평가 의뢰물건의 소유자(권리자)와 감정평가 의뢰인이 다른 경우 소유자(권리자)의 동의를 득하여 의뢰하여야 하며, 소유자(권리자)의 동의 없는 감정평가 의뢰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유자(권리자)와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1. 감정에 관한 소송은 당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12. 당사와 감정업무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 내용이 위 약정사항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더밸류감정평가법인㈜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률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밸류감정평가법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제 3자 제공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목적 : 감정평가 업무 및 감정평가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 *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소유자 및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 감정평가 의뢰 물건 소재지**  **(단,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선택항목 : E-mail   *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감정평가서 발송일로부터 5년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 * 의뢰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데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의뢰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경우 감정평가 업무를 착수할 수 없습니다.      |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의뢰인 : (인)  **더밸류감정평가법인㈜ 귀중** |